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22

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김선민·김재원·황운하

김준형 • 백선희 • 신장식

한창민 · 서왕진 · 차규근

박지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, 헌법에 명시된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.

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,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 특히,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.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어긋남.

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

로 추가하고,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(안 제8조, 제9조 제1항제5호). 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"금고"를 "탄핵이나 금고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회는 위원장 및 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위원은	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①
<u>금고</u>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	<u>탄핵이나 금고</u>
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	
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	
만,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	
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	
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	
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	
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	
퇴직하게 할 수 있다.	
	
<u><신 설></u>	② 국회는 위원장 및 위원이
	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
	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
	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.
제9조(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	제9조(위원의 결격사유) 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
	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